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4.	8	조례 제 667호
개정	1992.	3.	9	조례 제 708호
	1995.	3.	14	조례 제 876호
	1995.	6.	14	조례 제 882호
	1995.	7.	29	조례 제 895호
	1996.	7.	16	조례 제 943호
	1998.	3.	9	조례 제1067호
	1998.	7.	7	조례 제1084호
	1998.	9.	23	조례 제1088호(행정기구설치조례)
	1998.	11.	14	조례 제1100호
	2003.	12.	13	조례 제1329호
	2004.	3.	10	조례 제1338호
	2004.	11.	20	조례 제1367호
	2005.	7.	27	조례 제1396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	9.	23	조례 제1408호
	2006.	5.	22	조례 제1451호
	2006.	8.	29	조례 제1454호(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2006.	12.	15	조례 제1480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3.	28	조례 제1500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10.	10	조례 제1559호(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2008.	6.	16	조례 제1586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8.	8.	11	조례 제1605호(제명개정)
	2008.	11.	11	조례 제1629호
	2008.	12.	9	조례 제1630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9.	8.	10	조례 제1676호
일부개정	2010.	11.	25	조례 제1731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2.	8.	8	조례 제1862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3.	8.	1	조례 제193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4.	6.	27	조례 제2004호
일부개정	2014.	8.	14	조례 제2005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4.	11.	18	조례 제2038호
일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2125호(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3.	12	조례 제2233호
일부개정	2017.	8.	1	조례 제2271호
일부개정	2017.	9.	28	조례 제2291호
일부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32호
일부개정	2018.	4.	25	조례 제2370호
일부개정	2018.	9.	28	조례 제2411호
일부개정	2019.	6.	25	조례 제2503호
일부개정	2019.	12.	20	조례 제2560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 12. 22	조례 제2699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2. 1. 24	조례 제2833호
일부개정	2022. 8. 2	조례 제2888호
일부개정	2023. 9. 25	조례 제2999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3084호
일부개정	2024. 7. 4	조례 제311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6. 4. 17	조례 제3382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6. 8. 5	조례 제3402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6. 8. 5	조례 제34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교섭단체 및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0, 2008. 8. 11, 2022. 1. 24〉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 의원명부 대신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이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8. 11]

제2조의2(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19. 6. 25]

제2조의3(교섭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제2조의2에 따른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2조의4(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 7. 29, 98. 7. 7, 2003. 12. 13, 2006. 5. 22, 2008. 8. 11, 2014. 6. 27, 2015. 9. 30, 2017. 8. 1, 2017. 9. 28, 2026. 8. 5>

1. 기획행정위원회 : 7명 이내
2. 복지도시위원회 : 7명 이내
3. 운영위원회 : 7명 이내

[중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19. 6. 25]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 3. 14, 96. 7. 16, 98. 9. 23, 98. 11. 14, 2003. 12. 13, 2004. 3. 10, 2005. 7. 27, 2005. 9. 23, 2006. 12. 15, 2007. 3. 28, 2008. 6. 16, 2008. 11. 11, 2008. 12. 9, 2009. 8. 10, 2010. 11. 25, 2012. 8. 8, 2013. 8. 1, 2014. 8. 14, 2017. 3. 12, 2017. 8. 1, 2017. 9. 28, 2018. 9. 28, 2019. 12. 20, 2020. 12. 22, 2022. 8. 2, 2023. 9. 25, 2024. 7. 4, 2026. 4. 17, 2026. 8. 5>

1. 기획행정위원회

가. 시민소통관, 청년정책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하부행정기관에 속하는 사항

2. 복지도시위원회

가. 교통국, 돌봄복지국,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보건소, 친환경사업본부 소관에 속

하는 사항

나. 삭제 <2010. 11. 25>

3.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0, 2017. 8. 1>

② 부의장 및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8. 11. 14, 2003. 12. 13, 2017. 8. 1, 2017. 9. 28, 2026. 8. 5>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98. 7. 7, 2004. 11. 20, 2015. 9. 30, 2018. 4. 25>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 11. 20>

제6조(상임위원회 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98. 11. 14, 2015. 9. 30>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5. 9. 3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8. 29, 2022. 1. 24>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4. 25, 2022. 1. 24>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없다. <개정 2015. 9. 30, 단서신설 2017. 12. 29>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9. 30, 2018. 4. 25>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5>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08. 8. 1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8, 2015. 9.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4. 11. 18>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 11. 18>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5. 9. 30>

[제목개정 2014. 11. 18]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6. 16, 2015. 9. 30>

부칙

① 이 조례는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시행전까지 있었던 광명시의회위원회에관한조례(19 81. 7. 1 조례 제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2. 3.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초대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시행전까지 있었던 광명시의회위원회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3.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하여 구성되는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하여 구성되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개정 95. 6. 14>

부칙 <1995.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3.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1998.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12.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1월 18일에 공포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한 의회 및 집행부와 관련한 상임위원회 소관사무는 이 조례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운영”을 “의회운영”으로 한다.

부칙 <2004. 3.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을 “국장, 과장급”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4.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5.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 5. 22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29 조례 제1454호,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6. 12. 15 조례 제148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평생학습사업소”를 “지식정보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같은

항제2호가목 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② 내지 ⑰ 생략

부칙 <2007. 3. 28 조례 제15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지식정보사업소”를 “지식정보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로 한다.

② 내지 ⑧ 생략

부칙 <2007. 10. 10 조례 제1559호,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한다.

③ 내지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11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1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2. 9 조례 제163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건설교통국,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2009. 8. 10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5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지식정보사업소”를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부터 ⑦9 까지 생략

부칙 <2012. 8. 8 조례 제1862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으로 한다.

부칙 <2013. 8. 1 조례 제193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한다.

부칙 <2014. 6. 27 조례 제2004호>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4 조례 제2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2 까지 생략

④3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치행정위원회

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고용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하부행정기관에 속하는 사항

2. 복지건설위원회

가. 시민안전국, 복지돌봄국, 시민행복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2014. 11. 18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2125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
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2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1 조례 제2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0조제1
항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②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중 “의회운영위
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7. 9. 28 조례 제2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5 조례 제2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28 조례 제2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5 조례 제2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56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개발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 <2020. 12. 22 조례 제26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평생교육사업소”를 “평생학습사업소”로, “환경수도사업소, 건설지원사업소”를 “환경수도사업소”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2022. 1. 24 조례 제2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2 조례 제2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5 조례 제29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홍보담당관, 행정재정국, 평생학습사업소”를 “시민소통담당관, 홍보기획관,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사업본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환경수도사업소”를 “친환경사업본부”로 한다.

② 부터 ⑱ 까지 생략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4 조례 제311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시민소통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도시재생국, 신도시개발사업단”을 “도시주택국, 신도시개발국”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26. 4. 17 조례 제3382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사회복지국”을 “돌봄복지국”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2026. 8. 5 조례 제3402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을 “시민소통관, 청년정책관, 홍보기획관”으로,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평생학습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안전건설교통국”을 “교통국”으로, “신도시개발국”을 “균형발전국”으로 한다.

②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2026. 8. 5 조례 제34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및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및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각각 제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획행정위원회 및 복지도시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및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은 각각 기획행정위원회 및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위 원 회 명	직 위	직 급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복지도시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